

의안번호	제 377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6월 일 (제 281 회)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박재국의원 외 6인
발의연월일	2009년 6 월 2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77
------	-----

발의연월일 : 2009년 6월 2일
발의자 : 박재국, 연만흠, 강태원
김환동, 이필용, 장주식
조영재의원(7인)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및 체계를 정비하여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

- 조례명을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로 개정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 지방자치법 제34조제2항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5조제1항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4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다. 충청북도 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직제변경(안 제14조)

- 도 기획관 → 충청북도 정책기획관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및 체계 정비

- 1) “~라 함은”을 “~란”으로 변경
- 2)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변경
- 3) 그 밖에 및, 또는, 인, 이외, 기타 등의 자구를 알기쉬운법령 정비체제에 맞춤.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발췌 : 별첨

나. 관련부서 협의 : 의견없음(정책관리실)

다. 예산조치 :

라. 규제심사 :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상해에 대한 보상금지급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직무”라 함은”을 ““직무”란”으로, “의회의원”를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로, “회기중”을 “회기 중”으로, “본회의 또는”을 각각 “본회의나”로, “의장의 명에 의한”을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유족”이라 함은”을 ““유족”이란”으로, “자의”를 “자가”로, “자녀 및”을 “자녀 또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상해 또는”을 “상해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인한”을 “인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 중 “도의원 당해연도”를 각각 “해당연도”로, “상당한”을 “상응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조에 규정한”을 “제5조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나 제3호에 따라”로, “제1호 또는”을 “제1호나”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나 제2호에 따라”로, “제2호 또는 제3호 규정에 의하여”를 “제2호나 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장애”라 함은”을 ““장애”란”으로, “제45조에 규정된”을 “제45조에 따른”으로, “제14급”을 “제14급까지”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해”라 함은”을 ““상해”란”으로, “상해 또는”을 “상해나”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본인 또는”을 “본인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월”을 각각 “6개월”로, “각호”를 “각 호”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로, “충청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의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해당여부 및”을 “해당여부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을 각각 “명”으로, “도 정책관리실장”을 “충청북도 정책관리실장”으로, “각 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중”을 “자 중”으로, “임명 또는”을 “임명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의회의원 중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의무직 공무원이나 지방공사청주·충주의료원장 중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인”을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제1호에 따라”로, “의장”을 “의

회”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중 “퇴직 또는”을 “퇴직하거나”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도 기획관으로”를 “충청북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과 제2항, 제4조제1항과 제2항, 제5조제1항과 제2항, 제6조제1항과 제2항, 제8조제1항과 제2항,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12조제1항과 제2항, 제13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14조제1항과 제2항은 각각 항과 조문을 띄어쓰기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u>	<u>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u>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상해에 대한 보상금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0. 4></p> <p><u>제2조(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 9. 22, 2006. 10. 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직무”란</u> <u>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u> 2. <u>“의정활동비”</u>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u>“유족”</u>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및 부모를 말한다. <p><u>제3조(보상금 지급대상)</u>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u>상해 또는 질병으로</u>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u>인한</u>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p>②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 기준”에 준한다.</p> <p><u>제4조(보상금 지급기준)</u> ①보상금 지급금액은</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상해에 대한 보상금지급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직무”란</u>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원이 회기 중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삭제 3. <u>“유족”</u>이라란 의원이었던 자가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또는 부모를 말한다. <p><u>제3조(보상금 지급대상)</u>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u>상해나 질병으로</u>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u>인하여</u> 장애를 입었을 때 4. <u>그 밖에</u>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p>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 기준”에 준한다.</p> <p><u>제4조(보상금 지급기준)</u>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p>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 9. 22, 2006.

10. 4>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되 제5조에 규정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 ② 제1항 각호의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5. 9. 22)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 10. 4>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

다음과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응하는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제5조의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 ② 제1항 각호의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른 “폐질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될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나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이나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

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도지사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 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 충청북도의회의원 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 중 1인은 도 정책관리실장이 되며 나머지 3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5. 9. 22. 2001. 9. 13, 2006. 12. 22>

1. 의회의원 중 1인

2. 의무직 공무원 또는 지방공사청주·충주의료원장 중 1인

3.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도지사가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 소

1호 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 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여부와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 충청북도의회의원 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 중 1명은 충청북도 정책관리실장이 되며 나머지 3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회의원 중 1명

2. 의무직 공무원이나 지방공사청주·충주의료원장 중 1명

3.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 소

<p>속공무원인 위원이 <u>퇴직</u>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u>별지 제2호</u> 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u>도 기획관</u>으로 한다. (개정 95. 9. 22)</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속공무원인 위원이 <u>퇴직하거나</u>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u>별지 제2호</u>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u>충청북도 정책기획관</u>으로 한다. (개정 95. 9. 22)</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 제34조 (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제61조 단서에 따라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 제35조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④ 법 제34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